

인플레이션 會計情報公示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Disclosure of Inflation Accounting Information

吳 有 善*

《目 次》

- | | |
|---|-------------------------|
| I. 序 論 | 3. 公示制度에 대한 分析和 要約 |
| II. 歷史的 取得原價主義의 再評價 | V. 인플레이션 회계 도입에 따르는 問題點 |
| III. 物價變動 財務情報 公示制度化의 拾頭 | 1. 도입 목적에 대한 검토 |
| IV. 미국의 財務會計基準 第33號에 의한 物價變動 財務情報의 公示內容과 그 檢討 | 2. 評價修正의 對象資產의 범위 |
| 1. 物價變動 財務情報의 公示內容 | 3. 評價修正의 指標 |
| 2. 公示內容에 대한 檢討 | 4. 評價修正 差額 |
| | VI. 結 論 |

I. 序 論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世界各國의 基本的인 財務諸表는 取得原價主義會計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다. 取得原價主義會計의 會計數値는 企業外部者와의 實際去來에 따른 收入額과 支出額을 기초로 하여 測定되므로 客觀性을 維持할 수 있다. 물론 費用의 期間配分과 收益의 期間歸屬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基準의 테두리 안에서 主觀的인 判斷이 介入될 餘地는 있다. 그러나 全體期間의 立場에서 바라보면 取得原價主義會計의 損益計算은 客觀的으로 檢證이 可能한 收入額과 支出額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實際去來에 사

* 明知大學 經營學科 教授 · 會計學

용되는 貨幣의 1單位가 그대로 會計數値의 測定單位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의 貨幣 1單位는 어떤 時點의 貨幣이든 또는 어느 만큼의 購買力을 갖든 問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하에서라면 取得原價主義會計는 다음과 같은 限界를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로 取得原價主義會計의 測定單位는 名目貨幣單位이며 貨幣 1單位가 갖는 購買力의 下落, 즉 貨幣價値의 下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測定된 결과로서의 會計數値는 相互間의 比較可能性을 缺할 可能性이 있다.

둘째로 貨幣支出額에 따라 資產의 取得原價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그 資產에 발생한 價格變動은 일체 무시된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時에는 資產의 取得原價와 時價사이에는 커다란 差異가 생기며 時價와 乖離된 取得原價에 기초를 둔 費用額이 非現實的인 것이 될 염려가 있다.

셋째로 損益計算에 있어서 實質的인 資本維持가 어렵게 된다. 즉 取得原價主義會計에서는 名目的인 貨幣資本이 維持될 뿐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時에 있어서 取得原價主義會計의 限界를 배우기 위하여 무엇인가의 修正方法이 要求되며, 그 요구에 副應하는 會計를 一般的으로 인플레이션會計라고 한다.

그러나 現行의 會計制度가 原價主義會計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原因도 함께 考察할 必要가 있다. 그 根本的인 原因의 첫째는 過去의 경험에 비추어 인플레이션 그 自體가 企業自體에 있어서 會計數値를 修正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點과 取得原價主義會計의 長點인 確實性·檢證可能性·理解可能性·簡便性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原因은 企業의 經營者나 投資家들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取得原價主義會計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會計領域以外에서 인플레이션에 對處하여 現實的으로 調整을 하여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歷史的 取得原價主義會計에 대한 再評價와 인플레이션會計에 대한 美國에서의 會計情報의 公示現況을 紹介함으로써 物價變動이 현저한 우리 經濟環境에서의 會計情報公示의 制度化를 위한 基盤形成에 寄與하고자 한다.

Ⅱ. 歷史的取得原價主義의 再評價

歷史的原價主義는 數世紀에 걸쳐 유럽各國과 미국에서 會計慣行으로 定着되어온 會計制度이다. 최근 10餘年前부터 歷史的原價主義에 대한 批判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傳統的이고 健

全한(?)會計制度를 버리고 다른 代替의인 方法 즉 一般物價水準變動會計·個別價格變動會計·現行原價會計 또는 代替原價會計나 기타 時價主義會計로 轉換하려는 여러가지 見解가 續出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에 대하여 이지리(Yuji Ijiri) 教授는 이러한 企圖는 전혀 쓸데 없는 일이라고 主張하고 歷史的原價主義를 支持하는 다음의 5가지 命題를 제시하고 있다.¹⁾

第1 命題：歷史的原價에 의한 評價는 複式簿記制度안에 짜여진 評價節次의 構成部分으로서 企業實體의 資源에서의 일체의 現實的變動을 投入과 產出과 관련지어 記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는 持分會計의 本質的인 要件을 具備한 유일한 評價方法이다.

第2 命題：歷史的原價에 의한 評價는 현재 提案되고 있는 다른 여러가지 評價方法중의 어느 것 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資料를 提供한다.

第3 命題：歷史的原價에 의한 評價는 保有利得이나 保有損失의 인정을 배척함으로써 現實維持의 精神에 合致된다. 이 精神은 利害對立을 해결하고 社會에 있어서의 秩序와 安定을 유지하기 위하여 重要한 것이다.

第4 命題：歷史的原價에 의한 評價는 歷史가 將來를 豫測하기 위한 유일한 基礎인 한 洞察力이 있는 經營者 및 投資家에 의한 意思決定을 위하여 有用한 資料를 제공한다.

第5 命題：歷史的原價에 의한 評價는 현재 提案되고 있는 다른 어떤 評價方法보다도 記錄, 報告, 監査, 爭議의 해결등의 社會的費用에 비추어 社會에서 가장 費用이 들지 않는 評價方法이다.²⁾

즉 第1 命題는 持分會計에서 投入產出의 因果記錄의 方法으로서 原價主義가 가장 有效하며 그 制度의 構造의 不可分의 要素라는 것, 第2 命題는 原價主義는 다른 어떤 評價原則보다도 一義의이고 의문의 餘地가 없다는 것, 第3 命題는 利害關係者의 利害의 調整이라는 目的에 비추어 原價主義가 가장 社會의 秩序와 安定의 維持에 도움이 된다는 것, 第4 命題는 歷史야말로 將來의 豫測의 기초이며 따라서 經營者 및 投資者의 意思決定을 위해서도 原價情報가

1) Yuji Ijiri, "A Defense for Historical Cost Accounting", *Asset Valuation and Income Determination* : Robert R. Sterling, ed., Scholars Book Company, 1971, pp. 1 - 14.

2) James H. MacNeil, *Response to a Defense for Historical Cost Accounting in Asset Valuation and Income Determination*, edited by Sterling, pp.15 ~ 18.

마크닐은 原價主義의 各 命題에 대하여 철저한 反論을 제기하고 會計에 있어서의 眞實性은 客觀的인 市場價格에 의한 評價原則에 의해서만 保證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가장 有效하다는 것, 第5 命題는 다른 評價方法보다 原價主義가 社會一般에 있어 經濟性이 있다는 것등을 主張하고 있으나 이 다섯가지 命題는 그의 所論을 빌리지 않아도 이미 「企業會計原則」을 確立하는데 있어 모두 考慮된 企業會計上의 主要테마인 것이다.

오늘 날의 企業會計原則의 中心命題는 期間的 費用配分原理에 두고 있으며 이로부터 資產評價의 原則·費用收益對應의 原則·移延資產·充當金等 貸借對照表 能力原則등을 導出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會計原則의 中心命題인 期間的 費用配分原理는 歷史的 原價主義와 必然的으로 結合된 것이다. 오늘 날의 制度會計(持分會計)에 歷史的 原價主義파라다임을 確立하는 것이 現段階에서의 企業會計原則의 社會的 機能의 主要한 役割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歷史的 原價主義를 받치고 있는 制度會計파라다임은 絕對的인 것도 아닌 것이며, 歷史的, 社會的으로 不變의 것도 아니다. 經濟社會에 커다란 變動이 생기고 安定된 制度중에 緊急事態가 생기면 소위 paradim動搖(anomalies of paradigm)가 시작되는 것이다. 歷史的 原價主義를 1世紀나 체험한 유럽 各國과 미국에서는 최근 10餘年이래 paradim動搖가 일어나고 있으며 웰스教授(M. E. Wells)는 歷史的 原價主義에 의한 主流會計學派에 대하여 이를 批判하는 다음의 4개의 새로운 會計思想이 抬頭되고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³⁾

1. 價格水準修正會計 또는 現在購買力會計(price - level adjusted or current purchasing power accounting)⁴⁾
2. 代替原價會計(replacement cost accounting)⁵⁾
3. 喪失價值會計(deprival value accounting)⁶⁾
4. 繼續的 現在會計 또는 純實現可能價額會計(continuously contemporary or net realizable value accounting)⁷⁾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會計學界에서는 歷史的 原價主義의 paradim安定期는 10

3) M. C. Wells, "A Revolution in Accounting Thought?",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6, pp. 471 ~ 482.

4) 主要論者 Jones (1956) Mason (1971)

5) Edward & Bells (1961)

Mathews (1965)

Gynther (1966)

Revsine (1973)

6) Baxter (1967)

Wright (1970)

Stamp (1971)

Whittington (1974)

7) Chambers (1966) Sterling (1970) McKeown (1971)

餘年前에 끝이 나고 새로운 패러다임競爭時代に 들어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企業會計原則, 商法, 稅法에 原價主義가 確立되기 시작하여 證券去來法에 의한 企業內容의 公示制度和 公認會計士監査制度的 普及을 통하여 原價主義會計패러다임의 安定期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이 時期에 物價變動이라고 하는 커다란 經濟環境의 變化가 世界的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樣相은 各國에 따라 그 程度에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對應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최근 2·3年사이에 인플레이션會計에 관한 論議가 시작되고 있는 現狀이다.

그러면 어떻게 物價變動의 環境에 對處하여야 할 것인가? 그 影響을 우선 會計的으로 測定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現行 歷史的의 原價主義會計에서 物價變動이 企業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첫째로 在庫資產, 有形固定資產등 非貨幣性資產의 評價額에 미치는 影響이 있다. 예를 들면 物價가 上昇하면 非貨幣性資產의 取得原價와 現在時點의 價額과의 사이에 乖離가 생긴다. 따라서, 償却不足과 賣出原價의 過少表示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利益의 過大表示가 될 것이다.⁸⁾

둘째로 購買力의 低下에서 발생하는 購買力損益의 問題이다. 예를 들면 一般物價水準의 上昇期에 貨幣性資產에 생기는 購買力損失과 貨幣性負債에서 생기는 購買力利得을 問題視하는 것이다.⁹⁾

그러나 制度會計의 現段階에서는 歷史的의 原價會計를 基盤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問題解決은 그렇게 單純한 것은 아니다. 즉 取得原價主義會計의 構造變動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現行 制度會計下에서는 다음의 네가지 欠陷을 露呈하게 되는 것이다.

1. 總資產의 評價額, 純資產額, 總資本利益率, 一株當純資產額등에 관한 情報不足
2. 在庫資產, 有形固定資產등의 保有와 관련되는 損益(holding gain or loss)과 實際操業에 의한 利益 또는 損失과의 區別이 되지 않는 結果로서의 收益性에 관한 情報不足.
3. 減價償却不足의 累積的인 會計에의 影響으로서 當該有形固定資產의 再購入資金의 不足의 발생.

8)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個別價格變動會計가 발생하였다.

9)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一般物價變動會計가 발생하였다.

4. 購買力變動에서 생기는 購買力損益에 관한 情報不足등이다.

따라서 오늘날 選擇할 問題는 歷史的原價主義를 벗어나서 이러한 欠陷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會計原則에 準據할 것인가 또는 여전히 歷史的原價主義의 原則이래 이러한 欠陷을 是正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個別價格變動 및 一般物價水準變動의 兩面에서 物價變動會計에 관한 制度的 實驗에 들어서고 있다.

Ⅲ. 物價變動 財務情報公示制度化的 抬頭

미국의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는 1974년에 公表한 公開草案에서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公示의 制度化를 提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證券去來委員會(SEC)는 1976年 3월에 「會計連續通牒 190號」를 公表하고 證券去來委員會規則을 改正하여 一定規模以上の 登錄會社에 대하여 個別價格變動 財務情報의 部分公示를 義務化하였다. 그후 1978年 12月과 1979年 3월에 두개의 公示草案을 계속 公表하고 이에 대한 各界의 意見을 신중하게 分析 評價하고 1979年 9월에 財務會計基準 第33號(FASB Statement No. 33) 「財務報告와 物價變動」를 公表하였고 이 基準第33號에서는 個別價格(現行原價)變動財務情報以外에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도 公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¹⁰⁾

이와같이 미국의 證券去來委員會는 FASB의 基準第33號의 制度化를 承認하고 1976年 3월에 이미 SEC規則에 의하여 規定되고 實施하여 왔던 代替原價情報의 部分公示의 制度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즉 1980年 12月 25日以後에 終了하는 會計年度부터 FASB 第33號에 의한 物價變動 財務情報의 公示를 一定規模以上の 會社에 대하여 實施할 것을 SEC規則의 改正에 따라 決定한 것이다. 그리고 이 制度를 實施한 5年以内に 그 效果를 檢討하고 그 制度를 補完하기로 豫定되어 있다.

영국에서도 物價變動會計問題¹¹⁾는 1975년에 政府가 任命한 인플레이션會計委員會 즉 샌더랜드委員會의 報告書(Sandilands Report)가 公表되었다.

10) R. W. Berliner & D. L. Gerboth, FASB Statement No. 33 "The Great Experiment",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80, AICPA.

11) 物價變動會計에 대하여 一般物價變動會計와 個別價格變動會計의 2개의 體系로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一般物價變動會計에서 個別價格變動會計(특히 current cost accounting의 형태)의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 이 方向으로의 決定的인 契機가 된것은 Sandilands Report이다.

샌디랜드의 報告書는 物價變動會計에 관한 制度的實驗에 대한 勸告이었고¹²⁾ 그후 몇 가지 公示草案이 發表되고 많은 會社들이 自發的인 實驗을 試圖하는 段階에 들어섰다.

잉글랜드·웰스勸許會計士協會를 비롯한 6 개의 勸許會計士들의 團體는 1974年 5월에 「暫定會計實務基準 第7號」를 公表하고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公示의 制度化를 提案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諮問機關인 인플레이션會計委員會는 1975年 9月 그 報告書 「인플레이션會計」에서 個別價格(現行原價)變動會計를 導入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에 따라 勸許會計士協會등에 의하여 設置된 會計基準委員會는 인플레이션會計의 實施細目を 구체화한 「公開草案 第18號」를 1976年 11월에 公表하였으나 이 草案은 實行可能性에 대한 批判이 많아 採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暫定的인 措置로 同會計基準委員會는 1977年 11月 個別價格의 變動에 따른 賣出原價修正·減價償却費修正 및 負債調整의 3項目을 財務諸表의 補足情報로 公示할 것을 勸告하고 이 勸告에 따라 많은 企業들이 自發的인 公示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年 3월에 잉글랜드·웰스勸許會計士協會는 「會計實務基準 第16號」 『現行原價會計』를 公表하였다. 企業은 1980年 1月 1日以後 開始되는 會計年度부터 이 會計實務基準 第16號에 따라 情報公示가 要求되어 貨幣性項目에 관한 特殊한 修正을 附加한 個別價格變動 財務情報을 公示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物價變動會計는 미국보다 한걸음 앞선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우선 現行原價基準으로 作成된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作成 公示를 하여야 하며 損益計算에 있어서는 企業의 操業能力을 表示하는 純操業資産의¹³⁾ 維持에 관한 情報을 公示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이 새로운 會計制度는 모든 上場會社 및 一定規模以上の 非上場會社에 適用되며 實施後 3年以内에 이를 再檢討하고 必要가 있으면 修正할 것으로 豫定되어 있다.

오늘 날 物價變動 財務情報公示의 制度化가 시작된 것은 미국과 영국의 2 個國이나, 곧 캐나다, 오스트리아에 波及될 것이 豫想되며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自發的인 導入이 시작되고 있다.

12) 런던의 證券去來所는 Sandiland's Report 의 發表直後에 聲明書를 發表하고 이 報告書가 勸告한 現行原價시스템(current cost system)을 自發的으로 實驗할 것을 上場會社에 要望하고 있다.

13) 純操業資産이란 固定資産·在庫資産·貨幣性運轉資本으로 構成되는 資産額이며 貨幣性運轉資本은 本래의 營業活動에서 생기는 營業上의 貨幣性資産과 貨幣性負債와의 差額이다.

Ⅳ. 미국의 財務會計基準 第 33 號에 의한 物價變動 財務情報의 公示內容과 檢討

1. 物價變動財務情報의 公示內容

FASB Statement No.33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物價變動 會計情報을 基本財務諸表에 대한 補足情報로 公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데 從來의 SEC의 規則과 FASB의 새로운 Statement No.33과의 關係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FASB에서는 새로운 物價變動會計를 制度化하는데 있어 SEC當局에 대하여 現行規則을 早速히 改正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고 이에 따라 SEC當局은 1979年 10월에 「會計連續通牒 第271號」를 公表하여 FASB가 要求하고 있는 두가지 형태의 物價變動會計중에서 現行 原價會計가 Statement No.33의 指示대로 實施된다면 이를 條件으로 앞으로는 現行的 SEC規則을 適用하지 않겠다고 表明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국에서는 FASB의 Statement No.33이 새로운 制度로 시작되어 1980年 12月 25日以後 終了하는 會計年度부터 各企業에서 實施되었다.

이 Statement No.33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項目의 物價變動 會計情報을 公示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 ① 一般物價變動修正後의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
- ② 純貨幣性項目에 관련된 購買力利得 또는 損失
- ③ 個別價格變動修正後의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
- ④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期末現行原價
- ⑤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現行原價의 期中上昇分 또는 下落分으로 一般物價變動의 影響을 除去한 後의 金額

이 외에도 最近 5個年에 있어서의 賣出額·操業利益·純資産額·普通株 1株當 操業利益·1株當 市場價格등의 主要한 物價變動 財務情報을 時系列的으로 公示한 比較表를 作成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2. 公示內容에 대한 檢討

FASB Statement No.33에서의 具體的인 公示樣式인 다음의 A表 B表 및 C表¹⁴⁾에 의하여 그 公示內容을 檢討하고자 한다.

14)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FASB, September 1979. pp. 32 ~ 34.

SCHEDULE A

STATEMENT OF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ADJUSTED FOR CHANGING PRICES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1980

(In (000s) of Average 1980 Dollars)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as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		\$9,000	₩
Adjustments to restate costs for the effect of general inflation			
Cost of goods sold	(7,384)	₩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	(4,130)	₩	(11,514)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adjusted for general inflation		(2,514)	₩
Adjustments to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l inflation and changes in specific prices (current costs)			
Cost of goods sold	(1,024)	₩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	(5,370)	₩	(6,394)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adjusted for changes in specific prices		<u>\$8,908</u>	₩
Gain from decline in purchasing power of net amounts owed		<u>\$7,729</u>	₩
Increase in specific prices (current cost) of inventories and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held during the year*		\$24,608	₩
Effect of increase in general price level		<u>18,959</u>	₩
Excess of increase in specific prices over increase in the general price level		<u>\$5,649</u>	₩

* At December 31, 1980 current cost of inventory was \$65,700 and current cos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of accumulated depreciation was \$85,100.

SCHEDULE B

STATEMENT OF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ADJUSTED FOR CHANGING PRICES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1980

(In (000s) of Dollars)

	As Reported in the Primary Statements	Adjusted for General Inflation	Adjusted for Changes in Specific Prices (Current Costs)
Net sales and other operating revenues	\$253,000	\$253,000	\$253,000
Cost of goods sold	197,000 (o)	204,384 (p)	205,408 (q)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	10,000 (r)	14,130 (s)	19,500 (t)
Other operating expense	20,835	20,835	20,835
Interest expense	7,165	7,165	7,165
Provision for income taxes	9,000	9,000	9,000
	244,000	255,514	261,908
Income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9,000	\$(2,514)	\$(8,908)
Gain from decline in purchasing power of net amounts owed		\$7,729	\$7,729
Increase in specific prices (current cost) of inventories and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held during the year*			\$24,608 (x)
Effect of increase in general price level			18,959 (y)
Excess of increase in specific prices over increase in the general price level			\$5,649 (z)

* At December 31, 1980 current cost of inventory was \$65,700 and current cos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of accumulated depreciation was \$85,100.

SCHEDULE C
FIVE-YEAR COMPARISON OF SELECTED
SUPPLEMENTARY FINANCIAL DATA ADJUSTED FOR EFFECTS OF CHANGING PRICES

(In (000s) of Average 1980 Dollars)

	Years Ended December 31,				
	1976	1977	1978	1979	1980
Net sales and other operating revenues	265,000	235,000	240,000	237,063	253,000
<i>Historical cost information adjusted for general inflation</i>					
Income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2,761)	(2,514)
Income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per common share				\$(1.91)	\$(1.68)
Net assets at year-end				55,518	57,733
<i>Current cost information</i>					
Income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4,125)	(8,908)
Income (loss) from continuing operations per common share				\$(2.75)	\$(5.94)
Excess of increase in specific prices over increase in the general price level				2,292	5,649
Net assets at year-end				79,996	81,466
Gain from decline in purchasing power of net amounts owed				7,027	7,729
Cash dividends declared per common share	\$2.59	\$2.43	\$2.26	\$2.16	\$2.00
Market price per common share at year-end	\$ 32	\$ 31	\$ 43	\$ 39	\$ 35
Average consumer price index	170.5	181.5	195.4	205.0	220.9

상술한 5 個項目중에서 ①項目과 ②項目이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具體的으로 計算形式으로 表示한 것이 B表의 가운데欄(adjusted for general inflation)의 數值이다. 우선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의 計算過程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傳統的인 歷史的原價會計¹⁵⁾ 의한 會計시스템에서의 아웃·풋으로서 基本財務諸表를 作成하고 그 위에서 이 基本財務諸表상의 數值에 一般物價指數를 適用하여 指數修正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求하여진 數值가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이다.

이 情報의 公示內容을 더 補足하여 說明하면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란 測定單位로서 同一한 購買力을 갖는 貨幣單位¹⁶⁾를 採用하여 資産이나 費用의 評價基準으로서 歷史的原價基準을 採用하는 會計方法에 따라 生출된 情報이다.

이와 같은 FASB의 指數修正方法에 있어서 檢討할 內容은 ① 一般物價指數로서 消費者物價指數(consumer price index CPI)를 採用하고 있는 점과 ② 期中平均指數의 採用을 勸告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消費者物價指數를 採用한 것은 CPI 라는 指數를 利用하는데 타이밍(Timing)이 좋다는 점과 GNP디프레이터¹⁷⁾와 거의 같은 變動率로 推移된다는 理由를 들고 있다.

② 보통 期末時點 즉, 貸借對照表日에 있어서의 購買力을 나타내는 貨幣를 測定單位로 하여 基本財務情報을 修正한다는 立場을 취하여 왔는데 Statement No. 33에서는 종래의 方式도 적용하지만 그외에 期中平均指數를 適用할 것도 提案하고 있다.

1) 一般物價變動修正後의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

앞에 表示한 B表의 一般物價變動修正欄을 보면 여기에서는 測定單位로서 期中平均 購買單位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期中의 去來에 따라 計上되어 있는 賣出額에 있어서는 이미 期中平均 購買力單位에 의하여 測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¹⁸⁾ 修正을 必要로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基本財務諸表상의 賣出額 \$ 253,000 이라는 數值가 그대로 採用된다. 이 賣出額에 一般物價變動修正後의 여러가지 費用項目을 差減하면 「一般物價變動修正後의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이 산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費用項目의 修正에 있어서 期中平均指數

15) 이 會計시스템을 FASB에서는 「歷史的原價·名目單位會計」(historical cost·nominal dollar accounting)라고 부르고 있다.

16) 一般購買力單位와 同義語로 쓰여진다.

17) 원래 FASB에서는 指數修正에 GNP디프레이터를 利用할 것을 提案하였으나 이 GNP디프레이터의 公表의 타이밍이 약간 늦다는 점에서 CPI指數를 利用하게 되었다.

18) 단, 期中의 販賣去來가 그 會計期間을 통하여 平均的으로 이루어졌다고 假定한다.

를 適用하면 예를 들어 B表의 기타의 操業活動에 의한 費用이라든가 期中에 支給한 支給利子등 期中去來에 따라 計上된 費用額에 대하여 修正이 必要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結果로 指數修正이 必要한 것은 賣出原價項目과 減價償却費의 두가지 項目에 한하게 되고 다른 項目들에 대하여는 基本財務諸表上의 數値를 그대로 適用하여 費用計算이 이루어지게 된다.

2) 純貨幣性項目과 관련된 購買力利得 또는 損失

앞에 表示한 A表를 보면 \$ 7,729의 購買力利得이 나와있고 또 B表의 一般物價變動修正欄에도 \$ 7,729의 購買力利得이 나타나있다. 이 計算過程은 그前提條件으로 CPI가 期初에는 212.9 期中平均은 220.9 期末에는 243.5로 되어 있다. 그리고 貨幣性項目에 대하여는 純貨幣性負債¹⁹⁾가 期初는 \$ 55,000 期末은 61,000로 되어있다. 이 \$ 55,000 과 \$ 61,000은 각각 다른 時點의 달라로 表示되어 있기 때문에 그 修正過程을 表示한것이 D表이다²⁰⁾

SCHEDULE D

	Nominal Dollars		(000s) Conversion Factor	Average 1980 Dollars
Balance, January 1, 1980	\$55,000	×	220.9 (avg. 1980)	55,338
Increase in net monetary liabilities during the year	6,000		*	6,000
Balance, December 31, 1980	61,000	×	220.9 (avg. 1980) 243.5 (Dec. 1980)	C\$57,067
Purchasing power gain on net monetary items				<u>C\$ 7,729</u>

* Assumed to be in average 1980 dollars.

期初의 \$ 55,000을 期中平均의 指數를 적용하여 期中時點의 달라로 보면 \$ 57,067이다. 그리고 期中에 純貨幣性負債가 \$ 6,000이 增加하고 있다. 이것은 期中時點의 달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期中平均指數를 적용한 것으로 그대로 \$ 6,000로 나와 있다. 이 增加를 더하면

19) 貨幣性資産을 초과하는 貨幣性負債의 超過額

20)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FASB, September 1979, p. 118.

期中時點의 달라로 볼 때 純貨幣性負債가 \$ 63,067 이 된다. 한편 期末의 純貨幣性負債의 殘額은 名目 달라로 보면 \$ 61,000 이지만 이것을 期中平均의 달라로 보면 \$ 55,338이 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 7,729 만큼 負債의 辨濟에 必要되는 購買力負擔이 작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負債減少를 일단 利益으로 認識하는 것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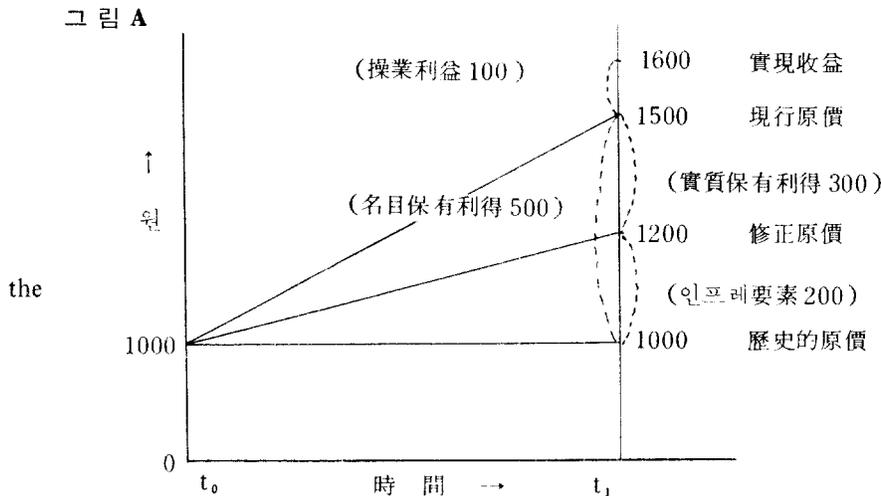
3) 個別價格變動修正後의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

個別價格變動會計라고 하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FASB에서는 現行原價會計 (current cost accounting)라고 一般的으로 불리우는 會計시스템으로 부터의 아웃·풋으로서 導出된 情報를 個別價格變動 財務情報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 表示한 B表의 個別價格變動修正欄에 表示되어 있는바와 같이 實現收益(\$ 253,000)에서 現行原價(current costs)로 測定된 費用(\$ 261,908)을 差減하여 얻은 利益²²⁾이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損失)으로 公示된다.

그리고 在庫資產 및 設備資產의 保有期間중에 생긴 利得 즉 保有利得도 表示된다. B表의 個別價格變動欄의 맨끝의 數值 \$ 5,649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在庫資產과 設備資產에 대하여는 期末現在에 있어서의 該當資產의 現行原價를 公示하도록 指示하고 있다.

以上이 個別價格變動 財務情報 즉 現行原價會計情報의 內容이다. 이 중에서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賣出原價와 減價償却費의 測定方法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21) 利益으로 認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論議가 있기 때문에 아직 意見으로 確定되지 못하고 있으며 統 一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操業利益에서는 區別한다는 것이고 期待利益이나 分配可能利益의 要素가 될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論及이 없다.

22) 여기서는 \$ 8,908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賣出原價에 있어서 위의 그림 A에서와 같이 t_0 時點에서 商品 1 單位를 1,000 원에 購入하고 이것을 t_1 時點에서 1,600 원에 敗賣하였다고 하고 이 t_1 時點에서의 現行原價가 1,500 원이었다고 하면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賣出原價는 이 商品의 敗賣時點(t_1)에 있어서의 現行原價에 따라 1,500 원으로 測定된다.

減價償却費의 計算에 있어서는 그 前提로 該當設備資産의 現行原價를 求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該當資産의 個別價格指數를 사용하여 現行原價를 求하면된다.²³⁾

例를 들어 어떤 設備資産(耐用年數 5 年の 機械)을 會計期間의 期初에 1,000 萬원에 購入하고 그 機械의 取得日의 個別價格指數는 400 이고 期末의 個別價格指數는 500 이었다고 假定한다면 이 機械의 期末의 現行原價는 1,250 萬원으로 산정된다.

$$1,000 \text{ 萬 원} \times \frac{500}{400} = 1,250 \text{ 萬 원}$$

여기에서 Statement No. 33에서는 設備資産의 減價償却費는 該當資産의 平均現行原價를 基礎價額으로 計算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機械의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基礎價額은 1,125 萬원이 되며 따라서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當期の 減價償却費는 225 萬원이 된다.

$$(1,000 \text{ 萬 원} + 1,250 \text{ 萬 원}) \div 2 = 1,125 \text{ 萬 원}$$

$$1,125 \text{ 萬 원} \div 5 \text{ 年} = 225 \text{ 萬 원}$$

이와 같이 賣出原價와 減價償却費의 두項目에 대하여는 現行原價基準에 의한 費用이 測定되고 다른 費用項目에 대하여는 이것은 期中去來에 따라 計上된 것이므로 이미 期中의 個別價格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修正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計算된 費用이 當期の 實現收益인 賣出額과 對應되어 그 結果로서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커런트·코스트(current costs) 利益이 산정된다.

4)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期末 現行原價

資産과 그 費用化額의 現行原價는 그測定時點에 있어서의 代替原價 또는 보다 낮은 回收可能價額(lower recoverable amount)으로 測定한다고 Statement No. 33에서 現行原價의 概念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Statement No. 33에서의 現行原價의 概念은 좀 넓은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測定時點에 있어서 比較될 回收可能價額에 있어서도 그 時點에서의 純實現可能價額과 該當資産의 使用에 의하여 들어올 將來收入의 割引現價와를 감안하

23) SFAS No. 33에서는 設備資産의 現行原價를 求하는데 엄밀한 直接評價法의 適用을 強制하지 않고 指數法의 採用을 認定하고 있다.

여 回收可能價額을 求하도록 指示하고 있다.²⁴⁾

따라서 賣出原價修正이나 減價償却費修正의 경우의 現行原價란 費用化時點의 現行原價로 이해하여도 된다고 생각된다.

5)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現行原價의 期中上昇分 또는 下落分으로 一般物價變動의 영향을 除去한 후의 金額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期中上昇分」에는 該當資産의 取得時點부터 期末現在까지의 個別價格(現行原價)의 上昇分과 取得時點부터 費消時點까지의 現行原價의 上昇分の 두가지가 混在되어 있다.

前者의 取得時點부터 期末時點까지의 個別價格의 上昇分은 그 資産이 아직 期末에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現行原價의 上昇分은 未實現保有利得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後者의 取得時點부터 期末時點까지의 現行原價의 上昇分은 實現保有利得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 表示한 A表나 B表上에서 在庫資産 및 設備資産의 保有期間중에 발생한 個別價格의 上昇分은 保有利得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保有利得중에는 實現保有利得과 未實現保有利得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保有利得중에는 다시 一般物價變動의 上昇分(인프레要素)이 部分的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名目貨幣單位로 測定된 實現 또는 未實現의 保有利得에서 인프레要素를 차감한 것이 純保有利得 즉 實質保有利得이 된다. 이 實質保有利得에 相當하는 것이 A表나 B表에서 볼 수 있는 「個別價格의 上昇이 一般物價의 上昇을 넘는 金額」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앞의 그림 A를 이용하여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t_1 時點이 期末이고 이 期末時點에서 전에 1,000 원으로 購入한 商品 1 單位를 保有하고 있다고 하자. 이 商品의 t_1 時點(期末時點)에 있어서의 現行原價가 1,500 원이라고 假定하면 現行原價 1,500 원과 歷史的原價 1,000 원과의 差額으로 名目額 500 원의 未實現保有利得이 認識된다.

다음에 가령 t_0 時點에서 t_1 時點 사이에 一般物價指數가 100에서 120으로 上昇하였다고 假定하면 1,000 원으로 購入한 商品의 修正原價는 1,200 원이 된다.

$$1,000 \text{ 원} \times \frac{120(t_1)}{100(t_0)} = 1,200 \text{ 원}$$

24) SFAS No. 33에서 代替原價보다는 현저하게 낮고 또한 永久的이다 라는 경우에 한하여 回收可能價額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指示하고 있음으로 우선은 現行原價=測定時點의 代替原價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現行原價 1,500 원에서 修正原價 1,200 원을 뺀 300 원은 實質未實現保有利得이 된다. 다른 觀點에서 보면 名目保有利得 500 원에서 인플레이션의 影響額 200 원을 除去한 差額 300 원이 實質保有利得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이 未實現保有利得에 대하여 생긴 實質保有利得의 내용인데 이것을 t₁ 時點이 賣却時點이라고 假定을 바꾸어 보면 歷史的原價 1,000 원과 現行原價 1,500 원과의 差額 500 원은 名目額으로 계산한 實現保有利得이 된다. 이 名目實現保有利得 500 원에서 一般物價의 變動分 200 원을 차감하면 그 差額 300 원은 實質實現保有利得이 된다.

앞에 表示한 A表와 B表上의 「個別價格의 上昇이 一般物價의 上昇을 넘는 金額」 S 5.649 은 상술한 實質實現保有利得과 實質未實現保有利得의 양자를 포함한 金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計算의 展開過程을 Statement No. 33의 附錄의 計算事例²⁵⁾를 利用하여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SCHEDULE E

Increase in current cost of inventories

	Current cost/ Nominal Dollars	(000s) Conversion Factor	Current cost/ Average 1980 Dollars
Balance, January 1, 1980 (paragraph 218b)	\$58,000 ×	220.9 (avg. 1980) 212.9 (Dec. 1979)	CS60,179
Production (paragraph 218c)	204,000	*	204,000
Cost of goods sold (paragraph 226)	(205,408)	*	(205,408)
Balance, December 31, 1980 (paragraph 218b)	(65,700) ×	220.9 (avg. 1980) 243.5 (Dec. 1980)	(59,602)
Increase/(decrease) current cost of inventories	<u>\$9,108</u> A		<u>CS831</u> a

* Assumed to be in average 1980 dollars.

25) SFAS No. 33, pp. 119 ~ 120.

E表(在庫資産의 경우)를 보면 \$ 9,108(A)은 名目貨幣單位로 表示된 名目保有利得을 計算하고 있다.

한편 오른쪽欄의 計算過程은 當期の 平均購買力單位를 測定單位로 하여 表示된 保有利得을 計算하는 것으로 C \$ 831 (a)은 在庫資産에 관련된 實質保有利得을 말하는 것이다.

SCHEDULE F

Increase in current cos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Current cost/ Nominal Dollars	(000s) Conversion Factor	Current cost/ Average 1980 Dollars
Balance, January 1, 1980(paragraph 219d)	\$74,100 ×	220.9 (avg. 1980) 212.9 (Dec. 1979)	C\$76,884
Additions (paragraph 219d)	15,000	*	15,000
Depreciation expense (paragraph 230)	(19,500)	*	(19,500)
Balance, December 31 1980 (paragraph 219d)	(85,100) ×	220.9 (avg. 1980) 243.5 (Dec. 1980)	(77,202)
Increase in current cos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u>\$15,500 B</u>		<u>C\$4,818 b</u>

그리고 F表를 보면 固定資産의 경우에도 名目貨幣單位를 測定單位로 하여 表示된 保有利得 \$ 15,500 B를 求하고 같은 方法으로 이를 期中의 平均指數를 사용하여 修正하면 오른쪽의 期中平均貨幣單位로 測定된 保有利得 즉 實質保有利得 C \$ 4,818 (b)이 求하여진다.

이제 E表와 F表의 結果를 모으면 G表와 같이 된다. 이表의 (x/z/y)의 金額이 앞의 A表 및 B表에서의 (x/z/y)의 金額과 연결된다.

SCHEDULE G

	Increase in Current Cost	(000s) Inflation Component	Increase net of Inflation
Inventory	\$9,108 A	8,277	C\$831 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5,500 B	10,682	4,818 b
Totals	<u>\$24,608 x</u>	<u>18,959 y</u>	<u>C\$5,649 z</u>

* Assumed to be in average 1980 dollars.

이와 같은 FASB의 計算方式을 保有利得을 名目과 實質로 나눌수는 있으나 實現分과 未實現分으로 分離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實現部分과 未實現部分이 함께 表示된다는 것은 財務諸表의 利用者에게는 問題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附錄의 다른 資料를 사용하면 實現分과 未實現分을 分離하는 것이 可能한데 이것은 先入先出法을 前提로 한 것이다.

3. 公示制度에 대한 分析和 要約

SFAS No.33에서는 인플레이션 情報의 公示標本으로 進술한 A表·B表·C表를 提示하고 있다. FASB에서는 歷史的原價會計에 의한 財務情報를 基本財務諸表로 하고 이 위에 一般物價變動 財務情報와 個別價格變動 財務情報의 양자를 公示하도록 指示하고 있는데 이것을 並列的으로 表示한 것이 B表이다.

이에 대하여 A表에서는 一般物價變動의 影響과 個別價格變動의 影響이 繼續的인 操業活動에 의한 利益, 즉 操業利益에 대하여 어떠한 影響을 끼쳤는가를 알수 있도록 兩者의 影響을 함께 公示하는 形式, 소위 結合會計의 表示方法으로 提示하고 있다.

그 計算過程을 A表와 B表를 比較하여 分析하면 우선 A表의 利益①은 歷史的原價會計上의 實現利益을 말한다. 이 實現利益에서 一般物價變動의 影響分, 특히 賣出原價와 減價償却費에 미친 一般物價變動의 影響을 除去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賣出原價에 있어서는 B表의 ②에서 ③을 빼면 A表의 ④의 金額이 구하여지는데, 이것이 賣出原價에 관련되는 一般物價變動의 影響을 除去할 金額이다.

減價償却費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B表의 ⑤에서 ⑥를 빼면 A表의 ⑦의 數置가 나오는데 이것이 減價償却費에 미치는 一般物價變動의 影響額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일단 一般物價變動修正後의 操業利益 A表의 ⑧이 求하여 진다.

그리고 實質實現保有利得을 操業利益의 계산에서 除去하기 위하여 A表의 ⑨과 ⑩의 金額을 계산하는데 A表의 ⑨은 B表의 ④와 ⑦의 差額으로 求하여진다. 또 A表의 ⑩은 B表의 ①와 ⑤의 差額으로 求하여진다. 이 ⑨과 ⑩이 實質實現保有利得에 해당된다.

이 個別價格變動의 影響額을 A表의 ⑧에서 다시 빼면 ⑪의 操業利益이 계산되는데, 이것은 一般的으로 實質操業利益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歷史的原價會計에 의한 實現利益에서 一般物價變動과 個別價格變動의 影響을 함께 除去한 다음의 操業利益인 것이다. 따라서 B表는 두가지 形態의 物價變動會計의 並列表示이고 A表는 結合會計의 表示인 것이다.

따라서 SFAS No.33에서는 物價變動會計情報에 대한 有用性에 대하여 濃센서스를 形成

하는데 焦點을 두고 있다. 즉 FASB는 이 Statement No. 33을 내놓기 전에 現行原價會計에 대한 公開草案과 一般物價變動會計에 대한 公開草案의 두가지를 公開하였는데 이에 대한 反應으로 財務諸表의 作成者(企業)나 公認會計士들은 一般物價變動會計情報의 必要性을 주장하였고 財務諸表의 利用者들은 오히려 個別價格變動會計情報쪽을 원하였다. 따라서 FASB에서는 이 Statement No. 33을 5年以内に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豫定하고 있다.

그리고 現行原價會計情報의 작성을 위하여 指數法을 적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實行可能性을 重要視하고 있다. 또한 一般物價變動會計情報를 우선 公示하고 그 다음에 個別價格變動會計情報를 公示하는 것과 같이 段階的인 導入을 考慮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 있어서의 物價變動會計는 이 Statement No. 33에 의하여 오늘 날 制度化되고 있지만 當分間은 試行段階라고 볼 수 있으며 物價變動 財務情報의 公示는 다음의 서가지 方式의 補足情報로서 나타나고 있다.

- ① 一般物價變動會計 및 個別價格變動會計에 의한 全面修正 財務諸表를 補足財務諸表로 公示하는 方法
- ② 앞에 表示한 A表나 B表와 같은 附表의 形式으로 公示하는 方法
- ③ 財務諸表에 대한 註記의 形式으로 公示하는 方法이 그것이다.

V. 인플레이션會計 導入에 따르는 問題點

1. 導入目的에 대한 檢討

貸借對照表가 企業의 實態를 表示하지 않는다는 觀點에서 인플레이션會計를 考慮한다면 貸借對照表項目은 原則的으로 現行原價 또는 代替原價로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貸借對照表의 財務狀態 表示機能의 適正化는 어떤 意味에서는 債權者目的이나 合併등에 있어서의 企業評價와 같은 特殊目的會計分野에 接近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普編的인 會計目的에 適合하는가에 대한 檢討가 必要하다.

2. 評價修正의 對象資産의 範圍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중에서 一般的으로 時價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土地이다. 따라서 土地의 評價修正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問題點이 된다. 損益計算과의 關係에 있어 原則으로 土地의 評價修正은 하지 않지만 財務狀態를 現實價額에 接近시키려면 土地의 評價修正은 可할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企業의 하나의 特徵은 企業그룹 相互間의 株式保有量이 많다는 점이다. 이 株式에 대하여서도 土地의 評價修正과 同一한 問題가 생긴다. 그리고 土地와 投資株式에 대한 評價修正을 한다는 前提에 선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評價差額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의 問題點이 提起된다.

3. 評價修正의 指標

인플레이션會計는 一般物價變動會計와 個別價格變動會計로 大別되는데 評價修正의 指標로 무엇을 適用할 것인가라는 問題는 결국 兩者중의 어떤것을 選擇할 것인가의 出發點으로 돌아가게 된다.

一般物價變動會計는 基本的으로는 歷史的原價會計를 前提로 하여 貨幣의 一般購買力의 變動에 따라 修正하려는 立場이다. 따라서 歷史的原價會計에 있어서의 貨幣單位의 質的不統一성이 是正되고 한편으로는 歷史的原價會計의 利點이 그대로 承繼된다. 또한 同一企業에 있어서의 時系列比較와 企業間比較가 可能하다. 그러나 이 方法은 企業의 財務狀態의 適正化라는 觀點에서의 要求에는 不滿足스럽다. 그리고 이 立場에서의 評價修正의 指標로 GNP 디플레이터, 都賣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의 어떤 것에서 貨幣의 一般購買力의 變動을 求할 것인가의 問題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個別價格變動會計에는 몇 가지 方法이 있지만 一般的으로 貸借對照表에 있어서의 財務狀態가 現實態에 가까운 價額으로 表示되고 損益計算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排除된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方法에서의 最大의 欠點은 個別價格의 變動을 어떻게 把握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考慮되는 指標로서는 類似資產의 現行原價, 個別物價指數, 鑑定人的 評價등이 있으나 物價變動의 影響을 크게 받는 設備資產에 대한 把握이 困難하다는 커다란 欠陷이 남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評價修正의 指標로 一般物價變動會計 및 結合會計를 考慮할 수 있으나 각각의 長短點이 있다. 따라서 評價修正의 指標는 社會的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4. 評價修正差額

評價修正에서 생긴 評價修正差額을 利益으로 볼 것인가 資本으로 볼 것인가의 가장 重要한 問題點이 남아 있다. 利益으로 보는 경우 어떤 時點에서 實現된다고 볼 것인가. 이 問題는 企業自體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債權者, 株式, 國家등 모든 利害關係者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具體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問題이다.

인플레이션會計에 있어서의 評價差額중에서 實體資本維持의 觀點에서 個別價格變動會計(

代替原價會計)의 적용에 따라 발생한 것은 資本으로 보는 데에 별다른 問題는 없으나 一般物價變動會計 및 個別價格變動會計중의 現行原價會計에서 발생하는 評價差額에 있어서는 資本이나 利益이나하는 問題가 남게된다.

Ⅵ. 結 論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歷史的原價主義會計制度에 安住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會計의 導入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未解決의 重要한 問題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充分한 論議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會計情報의 歪曲을 是正하여 會計情報의 公示內容을 實體에 符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必要性은 至大한 것이다. 인플레이션會計의 導入은 우리나라의 會計制度에 커다란 轉機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會計學者·職業會計人·研究機關등의 著書나 論文 또는 實務的으로 物價變動 會計情報의 社會的 要請에 대한 準備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物價變動에 관한 財務情報의 公示를 制度化하기 위한 準備作業으로 앞으로 어떠한 情報을 어떠한 方法으로 公示할 것인가에 대하여 充分한 檢討가 이루어지고 社會的인 合意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現在의 段階에서는 物價變動에 관한 情報로서 賣出原價 및 減價償却費에 대한 情報·在庫資產 및 減價償却資產에 대한 情報·貨幣購買力損益에 관한 情報·總資產額에 관한 物價變動情報등의 公示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公認會計士會 등에서 實踐性을 고려하여 具體的인 檢討를 거쳐 企業이 任意로 物價變動會計情報를 公示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觀點에서 우선 財務情報의 附屬資料로서 脚註나 附屬明細書의 形式으로 實驗的으로 導入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E.D. Edwards and P.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 Howard Ross, *Financial Statements—A Crusade for Current Values*, Pitman Publishing Corporation, 1969.
- Maurice Moonitz, *Changing Price and Financial Reporting*, Arthur Andersen & Lecture Series, 1973.
- Lawrence Revisine, *Replacement Cost Accounting*, Prentice-Hall, Inc., 1973.
- James A. Largay III and John Leslie Livingstone, *Accounting for Changing Price-Replacement Cost and General Price Level Adjustments*, John Wiley & Sons, Inc., 1976.
- Ernst & Ernst, *SEC Replacement cost-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Guidance*, 1977.
- David Scott, *The Sandilands Report-Its Impact on Insurance Valuations*, Keith Shipton Development Limited, 1975.
- Patrick R.A. Kirkman, *Accounting Under Inflationary Conditions*, Second Edition, George Allen & Unwin, 1978.
- Otto H. Jacobs & Ulrich Schreiber, *Betriebliche Kapital-und Substanzerhaltung in Zeiten Steigender Preise*, 1979, C.E. Poeschel Verlag GmbH.
-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Inventory Measurement, “A Discussion of Various Approach to Inventory Measurement”, Supplementary Statement No. 2,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4.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 FASB Exposure Draft*, 1978. *Constant Dollar Accounting, FASB Exposure Draft*, 1979.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3*, 1979.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eletion of Requirement to Disclosure Replacement Cost Information,” *SEC Accounting Series Release No. 271*, 1979.
-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Current Cost Accounting, Exposure Draft No. 24*, 1979.
-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Current Cost Accounting, Statement of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No. 16* ICAEW, 1980.
- The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Guidance Notes on SSAP 16: Current Cost Accounting*. ASC. 1980.
- 片野一郎, 「貨幣價值變動會計」, 同文館, 昭和 52 年.
- 吉田寬, 「インフレーションと會計」, 稅務經理協會, 昭和 53 年.
- 森田哲彌, 「價格變動會計論」, 國元書房, 昭和 54 年.
- 新井清光, 「財務會計論」, 中央經濟社, 昭和 55 年.
- 吳有善, 「英國의 인플레이션會計基準 第 16 號에 관한 小考」, 月刊經理社, 1980.
- 吳有善, 「美國의 物價變動會計에 관한 考察」, 月刊經理社, 1980.